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21

제출년월일 : 2009. 3 .12.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격을 완화하는 등 장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정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납골을 봉안**으로 정비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 별표 2).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자격을 사망일 현재 우리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망인 또는 상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주의 자격을 장남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에 맞게 "장남 또는 장녀"로 하고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최근친 연고자로 확대함(안 제5조).

다. 장사시설의 체계적인 수급을 위하여 중 · 장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에 묘지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마.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와동공설공원묘지를 꽃빛공원으로, 부곡동공설공원묘지는 하늘공원으로 공설공원묘지의 명칭을 부르기 쉽고 친근감 있게 변경함(안 별표 1).

사. 공설장사시설 중 묘지 및 봉안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그 종류별로 각각 징수하되 산골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9. 1. 22 ~ 2009. 2. 11(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정비계획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라 함은 과거에 설치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 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하며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공설공원묘지 형태로 재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3. "무연분묘묘역"이라 함은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매장하는 묘역을 말한다.
4.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5. "봉안시설" 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산골시설" 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설봉안시설" 이라 함은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이 설치 · 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망일 현재 망인 또는 상주(장남 또는 장녀.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2. 무연고 행려사망자
3.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거주한 자
4. 시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재난, 재해 등)로 인한 사망자
5. 시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6.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산골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 ①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장분묘 또는 봉안시설의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허가 시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골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경우에는 전액
2. 1년 이내에 시설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에는 50퍼센트

③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개인분묘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 한다.

제9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은 시장이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비석과 명패 외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비석 등 그 크기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설물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묘지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한 평면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에 있어서는 봉분묘 및 일반비석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6조에 따른 분묘의 면적제한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분묘, 비석 또는 명패 등을 설치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무연분묘(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개선 및 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사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묘역에 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 및 제9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 · 자활 · 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묘적부의 비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묘적부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장사시설의 관리) 공설장사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대한 장사시설의 중 ·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 ·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 ·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붕괴 ·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 ·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 · 침수 · 해일 등의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곳

제17조(권한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사회복지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용 덕
	담당·팀장 직위·성명	공중위생담당 안 미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미 경 (행정 2836)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등(제3조 관련)

1.공설공원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
꽃빛공원	단원구 와동 37-2	158,072
하늘공원	상록구 부곡동 산12	19,240

2.. 공설묘지

명 칭	위 치	면적(㎡)
군자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3	15,868
선부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59	8,231
화정동 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산116-1	48,000
팔곡동 공설묘지	상록구 팔곡동 산42	4,463
사사동 공설묘지	상록구 사사동 산23	7,710
대부북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6,744
대부동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동동 산281	3,967
선감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감동 산130-1	4,679
대부남동 1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	10,489
대부남동 2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1	8,061
대부남동 3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03	7,869
대부남동 4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0	6,790
대부남동 5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9	8,046
풍도동 공설묘지	단원구 풍도동 산 207	22,711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등(제8조 관련)

1.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매장)

구 분	1기당 면 적	납부금액(원)			비 고
		계	사용료	관리비	
공설공원 묘 지	6.6㎡ 이 하	612,000	231,000	381,000	매장
공설묘지	6.6㎡ 이 하	172,000	145,000	27,000	매장
공설공원 묘 지 무연분묘	0.25㎡ 이 하	100,000	60,000	40,000	화장 유골 매장

※ 비 고

1. 매장묘의 비석대, 잔디료, 매장 산역비 및 청소비 등 실비는 별도 부담한다.

2. 공설공원묘지 봉안시설(1단계)

〈2004. 10. 19 준공시설〉

구 분	납부금액(원)			비고
	계	사용료	관리비	
개인단	209,000	162,000	47,000	화장유골안치

※ 비 고

1. 봉안시설의 사망자 명패 제작비 및 청소비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
2. 1단계 사용분 만료 시까지 적용(반환분 포함)

3. 공설공원묘지 봉안시설(2, 3단계)

〈2006. 12. 22 준공시설〉

구 분	납부금액(원)			비고
	계	사용료	관리비	
개인단	337,000	262,000	75,000	화장유골 안치
부부단	505,500	393,000	112,500	

※ 비 고

1. 봉안시설의 사망자 명패 제작비 및 청소비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
2. 2, 3단계 사용분 만료 시까지 적용(반환분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2002.12.31) 2."공설공원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납골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3."공설묘지"라 함은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 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하며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공설공원묘지형태로 재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삭제2002.12.31) 5. "무연분묘묘역"이라 함은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매장하는 묘역을 말한다. 6."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라 함은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 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하며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공설공원묘지형태로 재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3. "무연분묘묘역"이라 함은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매장하는 묘역을 말한다. 4.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5. "봉안시설"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산골시설"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은 개인,가족,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3조(삭제2003.6.18)	
제4조(명칭과 위치)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명칭과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장사시설의 사용은 망인의 사망일 현재 안산시에 90일이상 계속하여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한 자(사망자 또는 상주)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시장은 묘지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한 유골을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에 매장하지 못하도록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망일 현재 망인 또는 상주(장남 또는 장녀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2. 무연고 행려사망자 3.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거주한 자 4. 시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자 5. 시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산골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삭제 1995.06.08)	
제8조(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①분묘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분묘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②(삭제2003.12.15) ③합장분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연령이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④납골묘의 부부단을 사용하려면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①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장분묘 또는 봉안시설의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삭제〉
제9조(사용기간)①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기간 및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삭제200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허가 시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기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허가 시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①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산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 1.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 납부한 금액의 전액반환 2.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1년 이내에 시설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50퍼센트를 반환 ③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합장분묘와 납골묘 부부단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개인단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를 가산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골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2. 1년 이내에 시설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 50퍼센트 반환 ③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개인분묘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삭제〉
제11조(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①장사시설은 시장이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묘지에 설치하는 비석은 비석의 크기, 비석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묘지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한 평면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9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은 시장이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비석과 명패 외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비석 등 그 크기 등은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시설물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묘지 일련 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한 평면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에 있어서는 봉분묘 및 일반비석을 설치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2조(사용허가 취소)①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크기, 비석의 설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영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납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6조에 따른 분묘의 면적제한 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분묘, 비석 및 명패 등을 설치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무연분묘(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개선 및 개장명령)①시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 분묘묘역에 안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개장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시장은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평분묘, 평면비석으로 개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개선 및 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사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묘역에 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 제9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삭제〉
제14조 (삭제2000.1.14)	
제15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①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 자활, 교육 특례자는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자활·교육 특례자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6조(묘적부의 비치)①시장은 묘지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묘적부의 서식은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제13조(묘적부의 비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묘적부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장사시설의 관리)①장사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장사시설의 관리) 공설장사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신설〉	제1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대한 장사시설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①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 따른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해일 등의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곳
제18조(권한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 등(제 4조 관련)

1. 공설공원묘지

명 칭	위 치	면적(㎡)
와동공설공원묘지	단원구 와동 37-2	158,072
부곡동공설공원묘지	상록구 부곡동 산12	19,240

2. 공설묘지 (생략)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0조 관련)

1. 공설공원 및 공설묘지(매장) (생략)

2 공설공원묘지 납골묘(1단계)

〈2004.10.19 준공시설〉

구 분	납부금액(원)			비 고
	계	사용료	관리비	
개인단	209,000	162,000	47,000	화장유골안치

※. 비고

1. 납골묘의 사망자 명패 제작비 및 청소비는 별도 부담한다.
2. (생략)

3 공설공원묘지 납골묘(2, 3단계)

〈2006.12.22 준공시설〉

구 분	납부금액(원)			비 고
	계	사용료	관리비	
개인단	337,000	262,000	75,000	화장 후 유골안치
부부단	505,500	393,000	112,500	

※. 비고

1. 납골묘의 사망자 명패 제작비 및 청소비는 별도 부담한다.
2. (생략)

개 정

[별표1]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 등(제 3조 관련)

1. 공설공원묘지

명 칭	위 치	면적(㎡)
꽃빛공원	단원구 와동 37-2	158,072
하늘공원	상록구 부곡동 산12	19,240

2. 공설묘지 (현행과 같음)

[별표2]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공설공원 및 공설묘지(매장) (현행과 같음)

2 공설공원묘지 봉안담(1단계)

〈2004.10.19 준공시설〉

구 분	납부금액(원)			비 고
	계	사용료	관리비	
개인단	209,000	162,000	47,000	화장유골안치

※. 비고

1. 봉안담의·····
2. (현행과 같음)

3 공설공원묘지 봉안담(2, 3단계)

〈2006.12.22 준공시설〉

구 분	납부금액(원)			비 고
	계	사용료	관리비	
개인단	337,000	262,000	75,000	화장 후 유골안치
부부단	505,500	393,000	112,500	

※. 비고

1. 봉안담의·····
2. (현행과 같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21

제안년월일 : 2009. 3. 27.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상위법령과 상충된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명확케 함

2. 주 요 골 자

○ 사용기간 중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사용기간이 지나 상주(또는 연고자)가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15년씩 연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제7조)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중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사용기간이 지난 상주(또는 연고자)가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사용기간) ①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기간)①.....사용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원안과 같음)